

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[별 표]

검 정 에 필 요 한 시 공 품 량(최소량)

[illegible]

④⑩외 용 세 제	9																					
④⑪경 고 제	9					30개	60개															
④⑫외 용 액 제	9	100ml	50ml			3개	15개															
④⑬외용분말제제	9					3개	15개															
④⑭외 용 틴 크 제	9	100ml	50ml			9개	15개						50ml	50ml								
④⑮연 고 제	9					3개	15개															
④⑯로 오 손 제	9	100ml	50ml			3개	6개															
④⑰점 안 제	9	100ml	50ml			15개	30개															30개
④⑱질 제(정)	9					30개	60개															
④⑲좌 제	9					15개	60개															
⑤⑩에 어 라 졸 제	9	100ml	50ml			9개	15개															
⑤⑪파 스 타 제	9	100ml	50ml			3개	6개															
⑤⑫살 충 제	9					50ml	300ml															
⑤⑬살 서 제	9					50ml	300ml															
⑤⑭한 외 마 약 제	9	100ml	50ml			100ml	600ml															
⑤⑮날 코 틴 제 (시 료)	9	100ml	50ml			30ml	240ml															
⑤⑯생 약 제 제																						
⑤⑰액 제	9	100ml	50ml			300ml	60ml						50ml	50ml				300ml	200ml	200ml		
⑤⑱환 제	9			18환		60환	100환					10g							20환	20환	20환	
⑤⑲산 제	9					60g	100g					10g							10g	10g	10g	

9003-1-75C
395mm×268mm

70.3.20 승인
(백상지 60g/m²)

※ 참고사항 ①시공품수거에 있어서 대소포장을 불문하고 포장단위를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.
 ②확인 및 정량시험항에 기재한 양은 1성분의 정량(3회시험)에 필요한 양임

- ③본표에 기재한 양은 확인 및 정량시험에 있어서 처방중 성분함량이 극히 미량일 경우는 본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
- ④본표에 해당하는 양은 정량법 및 성분명이 알려진 경우에 한함
- ⑤미지성분 및 정량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검체는 본표에 준할 수 없음
- ⑥검체보관량은 본표에 기재된 시험항목에 필요한 양의 $\frac{1}{3}$ 양임
- ⑦본 기재항목 이외의 항은 약전 및 자가기준시험법에 준함